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I .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20조 2,792억 4천 9백만원) 대비 15.1%(3조 566억 9천 2백만원) 증액된 23조 3,359억 4천 1백만원임.

※ 2021년도 최종예산 23조 7,449억 4천 2백만원 대비 1.7%(4,090억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감		증 감 륜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계	20,279,249	23,744,942	23,335,941	3,056,692	△409,001	15.1	△1.7
지방세 수입	20,023,706	20,023,706	23,095,574	3,071,868	3,071,868	15.3	15.3
지방세	20,023,706	20,023,706	23,095,574	3,071,868	3,071,868	15.3	15.3
보통세	17,884,431	17,884,431	20,708,171	2,823,740	2,823,740	15.8	15.8
목적세	1,938,270	1,938,270	2,177,403	239,133	239,133	12.3	12.3
지난연도수입	201,005	201,005	210,000	8,995	8,995	4.5	4.5
세외수입	253,930	253,930	238,828	△15,102	△15,102	△5.9	△5.9
경상적세외수입	33,197	33,197	68,933	35,736	35,736	107.6	107.6
재산임대수입	12,974	12,974	8,484	△4,490	△4,490	△34.6	△34.6
사용료수입	1,186	1,186	1,194	8	8	0.7	0.7
수수료수입	787	787	832	45	45	5.7	5.7
이자수입	18,250	18,250	58,423	40,173	40,173	220.1	220.1
임시적세외수입	220,251	220,251	169,149	△51,102	△51,102	△23.2	△23.2
재산매각수입	106,512	106,512	52,518	△53,994	△53,994	△50.7	△50.7
기타수입	106,350	106,350	106,779	429	429	0.4	0.4
지난연도수입	7,389	7,389	9,852	2,463	2,463	33.3	3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2	482	746	264	264	54.8	54.8
보조금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국고보조금등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국고보조금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보전수입	-	3,465,276	-	-	△3,465,276	-	△100.0
보전수입등	-	3,465,276	-	-	△3,465,276	-	△100.0
순세계잉여금	-	3,465,276	-	-	△3,465,276	-	△10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감		증 감 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계	20,279,249	23,744,942	23,335,941	3,056,692	△409,001	15.1	△1.7
지방세수입	20,023,706	20,023,706	23,095,574	3,071,868	3,071,868	15.3	15.3
보통세	17,884,431	17,884,431	20,708,171	2,823,740	2,823,740	15.8	15.8
취득세	5,058,937	5,058,937	6,204,612	1,145,675	1,145,675	22.6	22.6
주민세	601,134	601,134	616,633	15,499	15,499	2.6	2.6
재산세	3,394,557	3,394,557	3,827,592	433,035	433,035	12.8	12.8
자동차세	1,186,241	1,186,241	1,216,532	30,291	30,291	2.6	2.6
레저세	42,702	42,702	29,891	△12,811	△12,811	△30.0	△30.0
담배소비세	580,150	580,150	571,531	△8,619	△8,619	△1.5	△1.5
지방소비세	1,824,280	1,824,280	2,189,240	364,960	364,960	20.0	20.0
지방소득세	5,196,430	5,196,430	6,052,140	855,710	855,710	16.5	16.5
목적세	1,938,270	1,938,270	2,177,403	239,133	239,133	12.3	12.3
지역자원시설세	304,768	304,768	309,683	4,915	4,915	1.6	1.6
지방교육세	1,633,502	1,633,502	1,867,720	234,218	234,218	14.3	14.3
지난년도수입	201,005	201,005	210,000	8,995	8,995	4.5	4.5
지난년도수입	201,005	201,005	210,000	8,995	8,995	4.5	4.5
세외수입	253,930	253,930	238,828	△15,102	△15,102	△5.9	△5.9
경상적 세외수입	33,197	33,197	68,933	35,736	35,736	107.6	107.6
재산임대수입	12,974	12,974	8,484	△4,490	△4,490	△34.6	△34.6
공유재산임대료	12,974	12,974	8,484	△4,490	△4,490	△34.6	△34.6
사용료수입	1,186	1,186	1,194	8	8	0.7	0.7
기타사용료	1,186	1,186	1,194	8	8	0.7	0.7
수수료수입	787	787	832	45	45	5.7	5.7
증지수입	787	787	832	45	45	5.7	5.7
이자수입	18,250	18,250	58,423	40,173	40,173	220.1	22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923	13,923	53,997	40,074	40,074	287.8	287.8
기타이자수입	4,327	4,327	4,427	100	100	2.3	2.3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감		증 감 륜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임시적세외수입	220,251	220,251	169,149	△51,102	△51,102	△23.2	△23.2
재산매각수입	106,512	106,512	52,518	△53,994	△53,994	△50.7	△50.7
공유재산매각수 입금	106,512	106,512	52,518	△53,994	△53,994	△50.7	△50.7
기타수입	106,350	106,350	106,779	429	429	0.4	0.4
채납처분수입	6	6	16	10	10	166.7	166.7
위약금	195	195	232	37	37	19.0	19.0
그외수입	106,150	106,150	106,531	381	381	0.4	0.4
지난연도수입	7,389	7,389	9,852	2,463	2,463	33.3	33.3
지난연도수입	7,389	7,389	9,852	2,463	2,463	33.3	33.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2	482	746	264	264	54.8	54.8
변상금	482	482	746	264	264	54.8	54.8
변상금	482	482	746	264	264	54.8	54.8
보조금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국고보조금등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국고보조금등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국고보조금	1,613	2,030	1,539	△74	△491	△4.6	△24.2
보전수입	-	3,465,276	-	0	△3,465,276	-	△100.0
보전수입 등	-	3,465,276	-	0	△3,465,276	-	△100.0
잉여금	-	3,465,276	-	0	△3,465,276	-	△100.0
순세계잉여금	-	3,465,276	-	0	△3,465,276	-	△100.0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3조 2,034억 3천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9,219억 6천만원 대비 9.6% 증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3조 1,289억 1천 6백만원 대비 2.4%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 예산(안)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총 계	2,921,960	3,128,916	3,203,430	281,470	74,514	9.6	2.4
소 계	838,896	836,828	861,345	22,449	24,377	2.7	2.9
기본경비	2,226	2,226	2,043	△183	△183	△8.2	△8.2
인력운영비	801,225	801,642	792,041	△9,184	△9,601	△1.1	△1.2
재무활동	3	3	15,431	15,428	15,428	514,266	514,266
사 업 비	35,442	32,957	51,830	16,388	18,873	46.2	57.3
교부금	2,083,064	2,292,088	2,342,085	259,021	49,997	12.4	2.2
재정보전금	1,675,686	1,781,630	1,866,943	191,257	85,313	11.4	4.8
징수교부금	407,378	510,458	475,142	67,764	△35,316	16.6	△6.9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합 계	2,921,959,702	3,128,916,205	3,203,429,687	281,469,985	9.6
재무과	804,779,271	805,161,102	795,287,905	△9,491,366	△1.2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793,738	1,758,738	1,666,207	△127,531	△7.1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1,553,701	1,518,701	1,397,864	△155,837	△10.0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795,710	807,988	△22,722	△2.7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12,580	212,580	268,806	56,226	26.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5,703	175,703	211,013	35,310	20.1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34,708	334,708	110,057	△224,651	△67.1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240,037	240,037	268,343	28,306	11.8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5,957	25,957	27,037	1,080	4.2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101,000	101,000	0	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13,080	113,080	140,306	27,226	24.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802,985,533	803,402,364	793,621,698	△9,363,835	△1.2
기본경비	1,759,756	1,759,756	1,580,356	△179,400	△10.2
기본경비	1,759,756	1,759,756	1,580,356	△179,400	△10.2
인력운영비	801,225,777	801,642,608	792,041,342	△9,184,435	△1.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01,225,777	801,642,608	792,041,342	△9,184,435	△1.1
자산관리과	8,981,884	8,981,884	27,511,927	18,530,043	206.3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8,934,518	8,934,518	12,034,183	3,099,665	34.7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8,934,518	8,934,518	12,034,183	3,099,665	34.7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7,000,000	7,000,000	10,400,000	3,400,000	48.6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16,164	1,816,164	1,507,250	△308,914	△17.0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18,354	118,354	126,933	8,579	7.2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자산관리과)	47,366	47,366	47,366	0	0.0
기본경비	47,366	47,366	47,366	0	0.0
기본경비	47,366	47,366	47,366	0	0.0
재무활동	-	-	15,430,378	15,430,378	100
재무활동	-	-	15,430,378	15,430,378	100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	-	15,430,378	15,430,378	100
계약심사과	112,168	112,168	103,873	△8,295	△7.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2,500	42,500	35,250	△7,250	△17.1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42,500	42,500	35,250	△7,250	△17.1
계약심사 업무추진	42,500	42,500	35,250	△7,250	△17.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계약심사과)	69,668	69,668	68,623	△1,045	△1.5
기본경비	69,668	69,668	68,623	△1,045	△1.5
기본경비	69,668	69,668	68,623	△1,045	△1.5
세제과	1,680,076,552	1,786,021,075	1,873,833,598	193,757,046	11.5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2,242,512	2,242,512	1,760,226	△482,286	△21.5
납세자 권리보호	214,920	214,920	197,670	△17,250	△8.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86,920	186,920	178,520	△8,400	△4.5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28,000	19,150	△8,850	△31.6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지방세제 개선	1,200	1,200	1,200	0	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1,200	1,200	0	0.0
세수증대 활동지원	2,026,392	2,026,392	1,561,356	△465,036	△22.9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1,620,741	1,620,741	1,546,356	△74,385	△4.6
부동산가격 공시지원	405,651	405,651	15,000	△390,651	△96.3
행정운영경비	125,260	125,260	124,354	△906	△0.7
기본경비	125,260	125,260	124,354	△906	△0.7
기본경비	125,260	125,260	124,354	△906	△0.7
재무활동	2,565	2,565	590	△1,975	△77.0
보전지출	2,565	2,565	590	△1,975	△77.0
국고보조금 반환	2,565	2,565	590	△1,975	△77.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677,706,215	1,783,650,738	1,866,943,000	189,236,785	11.3
자치구교부금	1,675,686,000	1,781,630,523	1,866,943,000	191,257,000	11.4
재정보전금	1,675,686,000	1,781,630,523	1,866,943,000	191,257,000	11.4
출연	2,020,215	2,020,215	5,005,428	2,985,213	147.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20,215	2,020,215	5,005,428	2,985,213	147.8
세무과	420,937,019	521,517,168	499,679,006	78,741,987	18.7
시세입 목표달성	13,413,499	10,913,499	24,391,289	10,977,790	81.8
효율적인 세입관리	1,205,997	1,205,997	1,442,587	236,590	19.6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172,474	172,474	269,117	96,643	56.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0,532	850,532	869,319	18,787	2.2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991	182,991	304,151	121,160	66.2
세수증대 동기부여	4,093,230	1,593,230	2,342,337	△1,750,893	△42.8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2,700	192,700	292,700	100,000	51.9
시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000	-	-	△2,50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100,000	0	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300,530	1,300,530	1,949,637	649,107	49.9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7,234,540	7,234,540	19,664,893	12,430,353	171.8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730,770	1,730,770	1,921,108	190,338	11.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5,000,000	5,000,000	17,743,785	12,743,785	254.9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503,770	503,770	-	△503,770	△100.0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879,732	879,732	941,472	61,740	7.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79,732	879,732	941,472	61,740	7.0
행정운영경비	145,510	145,510	144,987	△523	△0.4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기본경비	145,510	145,510	144,987	△523	△0.4
기본경비	145,510	145,510	144,987	△523	△0.4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407,378,010	510,458,159	475,142,730	67,764,720	16.6
자치구교부금	407,378,010	510,458,159	475,142,730	67,764,720	16.6
시세 징수교부금	407,378,010	510,458,159	475,142,730	67,764,720	16.6
38세금징수과	7,072,808	7,122,808	7,013,378	△59,430	△0.8
조세정의 실현	6,995,242	7,185,722	6,935,812	△59,430	△0.8
강력한 고액체납시세징수	268,140	318,140	580,040	311,900	116.3
고액 체납시세 징수	268,140	318,140	580,040	311,900	116.3
체납시세 징수 지원	6,727,102	6,727,102	6,355,772	△371,330	△5.5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1,940,024	1,940,024	2,207,018	266,994	13.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4,787,078	4,787,078	4,148,754	△638,324	△13.3
행정운영경비	77,566	77,566	77,566	0	0.0
기본경비	77,566	77,566	77,566	0	0.0
기본경비	77,566	77,566	77,566	0	0.0

Ⅱ. 검토 의견

1. 2022년도 세입 여건 전망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40조 1,562억원) 대비 9.8%(3조 9,186억원) 증액된 44조 74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최종예산(46조 4,813억원) 대비 5.2%(2조 4,064억원) 감액된 수준임.

〈 서울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2022년 세입예산(안) 규모 〉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계	44,074,847,764	100.0%	46,481,270,910	100.0%	△2,406,423,146	△5.2%	
세입	지방세수입	23,095,574,000	52.4%	20,023,706,000	43.1%	3,071,868,000	15.3%
	세외수입	4,473,357,721	10.1%	4,616,383,340	9.9%	△143,025,619	△3.1%
	경상적세외수입	3,348,118,740	7.6%	3,382,990,667	7.3%	△34,871,927	△1.0%
	임시적세외수입	655,630,178	1.5%	721,670,560	1.6%	△66,040,382	△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9,608,803	1.1%	511,722,113	1.1%	△42,113,310	△8.2%
	지방교부세	175,561,646	0.4%	207,697,233	0.4%	△32,135,587	△15.5%
	보조금	7,864,755,009	17.8%	9,172,296,149	19.7%	△1,307,541,140	△14.3%
	국고보조금등	7,864,755,009	17.8%	9,172,296,149	19.7%	△1,307,541,140	△14.3%
	시·도비보조금등	-	-	-	-	-	-
	지방채	1,708,895,000	3.9%	2,125,146,000	4.6%	△416,251,000	△1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56,704,388	15.3%	10,336,042,188	22.2%	△3,579,337,800	△34.6%
	보전수입등	410,273,900	0.9%	4,082,408,760	8.8%	△3,672,134,860	△90.0%
	내부거래	6,346,430,488	14.4%	6,253,633,428	13.5%	92,797,060	1.5%

〈 서울시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22 예산(안)	2021 예산	증감	비율(%)
계	44,074,847,764	40,156,241,928	3,918,605,836	9.8
일반회계	31,228,080,787	27,725,766,942	3,502,313,845	12.6
특별회계	12,846,766,977	12,430,474,986	416,291,991	3.3

○ 이는 사상 처음으로 2021회계연도에 40조원(40조 1,562억원)을 넘어선 이후, 9.8%(3조 9,186억원)가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임.

※ 재무국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20조 237억원) 대비 15.3%(3조 719억원) 증액

※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하고, 15대 핵심과제*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①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②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9,934억 원), ③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④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⑤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 6,711억 원), ⑦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6,177억 원), ⑧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2,937억 원), ⑨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8,530억 원), ⑩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3,419억 원), ⑪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1,813억 원), ⑫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4,681억 원), ⑬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8,499억 원), ⑭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417억 원), ⑮ 기후변화 위기 선도적 대응(3,280억 원)

○ 재무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등 거래둔화, 금리인상,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여건이 세입에 반영 될 것으로 보는 반면,

○ 코로나 백신보급 진행과 함께 경기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나, 대면서비스 중심의 경제회복이 지체하여 경기의 제한적인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21~'22년 주요기관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연도	한국은행	KDI	OECD	IMF
2021년	4.0%	3.8%	3.8%	4.3
2022년	3.0%	3.0%	3.6%	3.4

※ 세계 경제는 2022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급속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선진국·신흥국 코로나 변이 확산세 지속, 미·중 갈등,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원달러 환율 등 경제성장 경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 상존

【'21~'22년 주요기관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연도	I M F	O E C D
2021년	6.0%	5.8%
2022년	4.9%	4.5%

- 지방세 주요 세목별 전망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거래 위축이 나타나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면 활동 관련 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보아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지방세 세입은 최근 5년간(2016~2020회계) 평균 예산액(16조 9103억원) 대비 15.1% 초과 징수(19조 4,682억원)되어 연평균 8.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세입 호조로 전년대비 19.2%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연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예산액	169,103	141,258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징수액	194,682	165,693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38,672
결산율	115.1	117.3	114.5	111.7	112.3	119.6	119.2
징수액 신장율	108.4	106.0	107.5	107.2	107.1	114.3	102.0

2. 세입예산 검토

○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0조 2,792억 4천 9백만원) 대비 15.1%(3조 566억 9천 2백만원) 증액된 23조 3,359억 4천 1백만원 수준임.

※ 2021년도 최종예산 23조 7,449억 4천 2백만원 대비 1.7%(4,090억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202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세 목	2022년 추계(A)	2021년		예산액 대비		전망액 대비	
		예산(B)	전망(C)	금액 (A-B)	증감율 (A/B)	금액 (A-C)	증감율 (A/C)
계	230,956	200,237	238,672	30,719	15.3	-7,716	-3.2
취 득 세	62,046	50,589	72,174	11,457	22.6	-10,128	-14.0
지 방 소 득 세	60,521	51,964	65,898	8,557	16.5	-5,377	-8.2
재 산 세	38,276	33,946	34,934	4,330	12.8	3,342	9.6
기 타 세 목	70,113	63,738	65,666	6,375	10.0	4,447	6.8

- 지방세 수입은 전년 예산(20조 237억 6백만원) 대비 15.3% (3조 718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23조 955억 7천 4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99.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2,539억 3천만원) 대비 5.9%(151억 2백만원) 감액된 2,388억 2천 8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은 전년 당초예산(16억 1천 3백만원) 대비 4.6%(7천 4백만원) 감액된 15억 3천 9백만원, 재무국 세입의 0.0%를 차지하고 있음.

가. 지방세수입

1) 보통세

- 지방세 중 일반회계 주요 자원인 보통세는 취득세 등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17조 8,844억 3천 1백만원) 대비 15.8%(2조 8,237억 4천만원) 증액한 20조 7,081억 7천 1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의 89.7%(전년도 89.3%)를 차지하고 있음.

가)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예산(5조 589억 3천 7백만원) 대비 22.6%(1조 1,456억 7천 5백만원) 증액된 6조 2,04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6.9%(전년도 25.3%)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22년도 취득세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목	2022년 추계(A)	2021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B)	전망(C)	금액 (A-B)	비율 (A/B)	금액 (A-C)	비율 (A/C)
취득세	6,204,612	5,058,937	7,217,444	1,145,675	22.6	-1,012,832	-14.0
부동산	5,532,589	4,391,939	6,547,898	1,140,650	26.0	-1,015,309	-15.5
차량	672,023	666,998	669,546	5,025	0.8	2,477	0.4

- 취득세 중 부동산분은 전년 예산대비 26.0%(1조 1,406억 5천만원) 증액, 차량분은 0.8%(50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재무국에서는 금년 들어 부동산 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기준 시점인 6월 이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연도별 서울 부동산 거래량 〉

(단위 : 건,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거래량	321,416	307,223	244,968	446,475	197,008
증감	3,459	-14,193	-62,255	78,540	△37,005
증감률	1.09	-4.42	-20.26	21.4	△15.8%

※ 출처: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 8월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

- 반면, 지속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여 2022년도에도 세입이 크게 증가(26.0%, 1조 1,406억원)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

- 양도세 강화로 매도 제약 증가 → 매물부족으로 매도자 우위시장이 형성되며 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매가격은 지속 상승 전망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 확대
- 내년도 입주 물량 감소로 매매가격 상승 압박 지속
- 상업용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감소와 주택 대체투자처로서의 증가 전망 상존

(2021.7.16.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 다만, 예산편성액(5조 5천 3백억원)은 금년 세입 전망액(6조 5천 5백억원) 보다 15.5%(1조 153억원)나 적고,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결산실적('21년분은 전망액)을 보면 연평균 1조 6,695억원 수준으로 초과징수 되어 결산률이 142.9%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2년 추계
예 산 액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4,391,939	5,532,589
징 수 액	4,775,578	4,539,452	4,937,200	6,723,099	6,547,898	
결 산 율	140.2	121.1	136.5	167.5	149.1	

나)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징수하는 세목으로, 전년 예산(427억 2백만원) 대비 30.0%(128억 1천 1백만원) 감액한 298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1%(전년도 0.2%)를 차지하는 수준임.

※ 전전년도인 2020년 예산규모 1,248억 7천 3백만원 수준임.

○ 레저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세목으로, 금년도의 경우 경마 등 과세대상 경기의 중단으로 10월말까지 세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재무국에서는 위드코로나 추세에 따라 연말 경기 재개를 예상하여 2억 1천 3백만원(예산액의 0.5%) 수준의 징수를 기대하고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 산 액	126,768	132,083	131,021	124,873	42,702	29,891
징 수 액	140,861	135,150	128,189	22,924	213	
결 산 율	111.1	102.3	97.8	18.4	0.5	

- 다만, 「경륜·경정법」 개정(2021.8.1.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어,

※ 경마의 경우 온라인 발매 허용에 대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의안번호 2104438, 제안일자 2020.10.7.,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1인,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의 신중한 입장 고수 중)

-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발매분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에 대하여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1.10.8.)하여 계류 중에 있음.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2819	2021-10-08	정부	제21대 (2020~2024) 제391회

구 분	현 행	개 정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p><신 설> ※ 유권해석에 의해 본장에 귀속</p>	<p>본장 소재지(50%), 전국 지자체*(50%) 귀속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p>

○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미개최로 금년 레저세 세입이 발생하지 못하는 등 2020회계연도 이후 극히 저조한 세입 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이전 1,347억원 수준('17년부터 '19년도)의 안정적인 세입을 유지해온 세목으로

※ 코로나19 전 징수액 : '17년 1,409억원, '18년 1,352억원, '19년 1,282억원

- 온라인 승마투표권 등 발매에 따른 납세지의 전국 확대안에 대한 입법과정에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소비 행위를 세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022년 담배소비세 예산은 전년 예산(5,801억 5천만원) 대비 1.5%(86억 1천 9백만원) 감액된 5,715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5%(전년도 2.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금연정책 영향으로 매년 세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추계
예 산 액	634,255	624,383	565,175	564,349	580,150	571,531
징 수 액	634,736	607,910	565,435	605,200	573,826	
결 산 율	100.1	97.4	100.0	107.2	98.91	

※ 2020년도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세점 수요의 내수 구매 전환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지속 여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연간 서울시 흡연율 및 담배판매량 현황 〉

(단위 : 천갑,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흡 연 율 ¹⁾	19.8	20.2	21.1	21.1	22.6
(증 감 륜)	(-0.4)	(-0.9)	(0.0)	(-1.5)	(1.0)
담배판매량 ²⁾	600,993	561,504	603,684	630,324	656,596
(증 감 륜)	107.0	(93.01)	(95.77)	(96.00)	(121.90)

※ 출처: 통계청 / 2) 담배판매량 = 담배소비세 징수액 / 1,007원

라)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른 세입 과목으로, 전년 예산(1조 8,242억 8천만원) 대비 20.0%(3,649억 6천만원) 증액된 2조 1,892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9.5% (전년도 9.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6.5%의 높은 예산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 산 액	1,055,931	1,212,695	1,794,673	2,041,427	1,824,280	2,189,240
징 수 액	1,305,360	1,399,063	1,928,261	1,942,810	1,799,834	
결 산 율	123.6	110.4	107.4	95.2	98.7	

※ 2021년 징수전망액 감소 사유는 '21년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편성된 정부의 '21년 부가가치세 예산(66조 6,535억원)이 '20년 대비 △2조 2,175억원(△3.2%)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세입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도는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효과로는 지방소비세율 확충분(2.7%, 최종 23.7%*) 985억원 등 1,505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확충분 감안 세입 1,505억원 증가 (인상분(2.7%) 985억원 + 약 520억원(전환사업, 행안부 전망치))

* 소비지출분(15%)과 취득세 보전분(6%)으로 구분

: 소비지출분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5%('18년) → 9%('19년) → 15%('20년) → 21%('21년) → 23.7%('22년) → 25.3%('23년 예정), 취득세 보전분 6% 적용 유지

〈 2022년 지방소비세 추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①+②+③)	①소비지출분(5%)	②취득세보전분(6%)	③전환사업보전분 등(10%)+인상분		
				지방이양	잔여분	인상분
금액	2,189,240	611,256	752,477	78,727	648,270	98,510

※ ① 소비지출분 전망(5%분) : 611,256백만원

② 취득세 보전분 전망(6%) : 752,477백만원

③ 전환사업 보전분 및 인상분 등 전망(12.7%) : 825,507백만원

〈 서울시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

(단위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소비지출분 (5% 및 잔여분10%)	12.724	12.980	12.867	13.646	13.746	13.843
취득세 보전분(6%)	22.120	23.390	24.487	26.633	27.198	25.085
전환사업 보전분	787억원	267억원	267억원	해당 없음 ('20년부터 적용)		

- 예산액 산출 방법을 보면, 2022년 세율 2.7% 인상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세입이 증액되는 규모는 1,980억원으로 산출되나,
 - 지방소비세 재원에서 전환사업 보전재원(이에 따른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포함)을 선공제('20년부터 '21년까지 4.5조원)함으로써, 세율 인상 효과는 985억원*(△995억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 인상분(2.7%분) 98,5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년 부가세 예산	x	세액신 장율	x	세율	-	기능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재원 변동액	x	서울시 안분율	x	광역- 기초간 배분율	=	소비지출분 (2.7%)인상분 추계액
99,677,588		96.39%		2.7%		1,030,000		273,797		12.724%		60%		98,510

- 여기에 서울시에 배분되는 전환사업비 520억원(행정안전부 추정액)을 추가 하더라도 세율인상 효과는 1,505억원(정당액 대비 △47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나아가, 그동안 예산·결산 심의 시 우려했던 대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전환사업비 등에 우선 배분하는 한시적 선공제 조건을 당초 2022년도 까지에서 2026년도까지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2021.8.25.)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가결(2021.11.11.)된 상태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 중)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 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p>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6. (생략)</p> <p>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생략).</p> <p>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p>

○ 이렇듯 지방소비세 재원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선공제 기한 연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의 퇴색으로 보기에 충분한 행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정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해 온 의회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분권 무력화 시도에 무능하게 대응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것임.

- 매년 국가예산 1조원('22년 0.75조원) 적립하여 조성(10년 한시)
- 지역소멸대응사업 추진 목적으로 투자계획 제출·승인을 통한 운영

③ 기초단체 국고보조율 인상(0.2조원) : 대상사업 및 지자체 미정

- 자치구 중심의 대응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펀셋 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진행중(기재부)

□ 서울시 재정책총 효과

- 1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재정 순확충 규모 약 4,400억원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3.5조원, 3년 한시)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 순확충 규모 약 1,505억원
 -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소멸대응기금(1조원)을 제외하고 잔여 순확충분 배분 시, 우리시는 약 1,505억원 세입 순확충
 -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확충분 감안 세입 1,505억원 증가 : 인상분(2.7%) 985억원 + 약 520억원(지방이양)

마)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고, 전년 예산(6,011억 3천 4백만원) 대비 2.6%(154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6,166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7%(전년도 3.0%)를 차지하는 수준임.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산액	478,803	505,197	544,955	594,465	601,134	616,633
징수액	496,310	539,899	579,017	594,603	589,694	
결산율	103.7	106.9	106.3	100.0	98.11	

〈 주민세 세세목별 구분 〉

구분	과세 기준	징수
개 인 분	개인 - 4,800원(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	8월 정기분 신고· 납세고지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5만원 (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미만 제외)	
	법인사업자 -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20만원	
	1㎡ 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매월 10일限 신고·납부

- ※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정액 세율로 과세되며, 세입 변동성은 낮으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세입이 소폭 증가되는 추세로, 161억 5천 4백만원(전년 대비 1억 4천만원, 0.9% 증액)으로 추계
- ※ “사업소분”은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경기 위축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594억 2천 8백만원 (전년 대비 42억 9천 6백만원, 6.7% 감액)으로 추계
- ※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을 반영하여 5,410억 5천 1백만원으로 추계(전년대비 196억 5천 5백만원, 3.8% 증가)하고 있음.

바)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2022년도 국세 세입 여건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5조 1,964억 3천만원) 대비 16.5%(8,557억 1천만원) 증액된 6조 521억 4천 만원을 편성하여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6.2%(전년도 26.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취득세(26.9%)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임.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 산 액	4,229,767	4,848,309	5,238,562	5,433,080	5,196,430	6,052,140
징 수 액	4,639,565	5,494,275	5,805,876	6,107,644	6,589,818	
결 산 율	109.7	113.3	110.8	112.4	126.8	

- 본 세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 소득분과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부동산 등의 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4년까지는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부가세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음.
 - ※ 종합소득분 및 양도소득분은 매년 5월, 법인소득분은 4월에 신고납부
 - ※ 종합소득분은 '21년 예산(6,525억 9천 1백만원)대비 20.2% 증액된 7,843억 8천 7백만원으로,
 - ※ 양도소득분은 '21년 예산(6,336억 4천만원) 대비 7.9% 증액된 6,837억 5천 5백만원으로,
 - ※ 법인소득분은 '21년 예산(1조 2,605억 7천 1백만원) 대비 33.1% 증액된 1조 6,781억 6천 4백만원으로,
 - ※ 특별징수분은 '21년 예산(22조 6,496억 2천 8백만원) 대비 9.7% 증액된 2조 9,058억 3천 4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재무국은 금년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에 따른 기업 및 자영업의 완만한 실적 회복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세를 전망하여 전년 대비 16.5% 수준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지방소득세 추계 방법을 보면, 본 세목은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국세 세입 예산에 5년내 서울시 징수액 점유비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 서울시 점유비는 최근 5년 전국 지방소득세입 대비 최소 점유비 적용

※ 지방세 점유비는 최근 3년 국세 대비 전국 지방세입 점유비 및 징수율 적용

- 최근 5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결산률이 114.6%(2021년은 전망)에 달하여 과도하게 초과징수되고 있는바, 국세 추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추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본 세목의 체납규모는 총 체납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징수실적 또한 징수결정액(5,415억원)의 10.1%(548억원)에 그쳐 가장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는 조세채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하겠음.

<2020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재산세(도시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8,344	552	158	5,415	1,069	1	300	324	64	461
(점유율)	100	6.6	1.9	64.9	12.8	0.0	3.6	3.9	0.8	5.5
수납액	1,846	73	57	548	625	0	124	152	22	245
결손액	2,453	201	23	2,088	65	0	18	15	3	40
미수납액	4,044	277	79	2,778	380	1	158	156	39	176
징수율	22.1	13.2	36.1	10.1	58.5	0.0	41.3	46.9	34.4	53.1
결손율	29.4	36.4	14.6	38.6	6.1	0.0	6.0	4.6	4.7	8.7
미수납율	48.5	50.2	50.0	51.3	35.5	100.0	52.7	48.1	60.9	38.2

사) 재산세

- 재산세는 징수액 전액이 자치구로 균등 교부(‘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되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시 세입 재원인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3조 3,945억 5천 7백만원) 대비 12.8%(4,330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3조 8,275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6.6%(전년도 17.0%)를 차지하는 세목임.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 산 액	994,735	1,076,672	1,212,025	1,414,625	1,634,326	1,818,860
징 수 액	1,064,505	1,169,661	1,342,389	1,522,721	1,690,571	
결 산 율	107.01	108.64	110.76	107.6	103.4	

- *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 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07년 신설)
-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22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1조 8,188억 6천만원(전년 예산 대비 11.3% 증가)을 편성하고 있고,
-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부가 과세되는 세목으로, 세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조 87억 3천2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4.1%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 특별회계(70%), 주택 사업 특별회계(2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전출
-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택 14.87%, 건물 1.37%, 토지 11.54% 수준임.
- 한편, 2022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등 대선공약이 발표(2021.11.15.)되는 등 재산세 세입 추계에 대한 변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긴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아) 자동차세

- 자동차세 예산은 전년 예산(1조 1,862억 4천 1백만원) 대비 2.6%(302억 9천 1백만원) 증액된 1조 2,165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5.3%(전년도 5.9%)를 차지하는 세목임.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추계
예산액	1,054,540	1,101,638	1,132,092	1,104,975	1,186,241	1,216,532
징수액	1,083,783	1,275,545	940,104	1,168,471	1,177,640	
결산율	102.8	115.8	83.0	105.7	99.3	

-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
- ※ 소유분 자동차세는 2021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세액신장율 100.63%와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90.06%를 반영하여 2021년 예산 대비 2.7%(13억 3천 5백만원) 감액된 6,164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되며, 2022년도 규모는 6,001억 3천 2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보전분은 자동차세 인하 보전 총액 9,830억원을 지역별 안분비율에 따라 정액으로 교부되며, 1,448억 7천 2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 총액	x	서울시 안분율	=	2022년 추계액
983,000		14.7377%		144,872

※ 안분율은 '21년 하반기 안분율을 적용

- 유가보조금 보전분은 2022년도 경제회복에 따른 석유류 수요 회복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재원인 2022년 국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액은 16조 7,570억원으로 2021년 15조 7,015억원 대비 6.7%(1조 555억원) 증액되었으며, 여기에 주행세 세율 26%를 적용하여 지역별 안분율에 따라 4,552억 6천만원이 납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22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액		16,757,000
(X) 주행분 세율	X 26%	4,356,820
(-) 자동차세 보전분 전국 안분액	- 983,000	3,373,820
(X) 서울시 안분율	X 13.4939%	455,260

※ 다만,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2021.11.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재무국은 유류 소비 증가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6% 세율 축소(교통세의 26% → 20%) 규모로 볼 때, 세입 결손의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유가인하 관련 자동차세 세입영향 분석

□ 유류세 인하(11.12~22.4.30까지 6개월간)

- 국세 세입의 감소로 유류분의 감소가 예상되나, 반면 유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세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세(주행분)는 교통세액의 26% → 20%로 인하
- 유가세 인하(20%)는 추계 시점에서는 전혀 예상에 없던 사항임

○ 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는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10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세 세율(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이는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장 많은 4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자동차”(1600cc초과 2000cc)의 연간 세액은 최대 40만원(1988cc, 399,600원) 수준인바,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정액 세율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점유 현황 〉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분	합계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이상
대수	1,360,146	482	11,381	297,986	544,302	232,217	144,300	129,478
점유비	100.0	0.0	0.8	21.9	40.0	17.1	10.6	9.5

2) 목적세

○ 지방세 중 특별회계로 진출되는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1조 9,382억 7천만원) 대비 5.6%(2,391억 3천 3백만원) 증액된 2조 1,774억 3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의 9.4%(전년도 9.7%)를 차지하고 있음.

가)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 예산(3,047억 6천 8백만원) 대비 1.6%(49억 1천 5백만원) 증액된 3,096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3%(전년도 1.5%)를 차지하는 세목임.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산액	258,985	275,965	284,868	300,925	304,768	309,683
징수액	269,844	289,133	289,260	305,590	305,918	
결산율	104.2	104.8	101.5	101.6	100.4	

-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소방사무 제반비용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며,
- ※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2022년 예산은 2억 7천 4백만원(전년 대비 8천 4백만원, 44.2% 증가)을 편성
- ※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2022년 예산은 12억 5천 2백만원(전년 대비 8천 8백만원, 7.6%)을 편성
- ※ “소방분”은 소방시설에 따른 이익을 받는 건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2022년 예산은 3,081억 5천 7백만원(전년대비 47억 4천 3백만원, 1.6%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나)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전년 예산(1조 6,335억 2백만원) 대비 14.3%(2,342억 1천 8백만원) 증액된 1조 8,677억 2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의 8.1% (전년도 8.1%)를 차지하는 세목이며, 전액 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사용되는 목적세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 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

세 목	본세 추계액	세율	지방교육세 추계액
합 계	8,311,960	-	1,867,720
부 동 산 취 득 세	2,766,294	20%	553,259
재 산 세	3,827,592	20%	765,518
균 등 분 주 민 세	53,144	25%	13,286
자 동 차 세	595,812	30%	178,744
레 저 세	29,891	40%	11,957
담 배 소 비 세	571,532	43.99%	251,417
등 록 면 허 세	467,695	20%	93,539

3) 지난년도수입(시세)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예산은 전년 예산(2,010억 5백만원) 대비 4.5%(89억 9천 5백만원) 증액된 2,1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21년 전망	'22년 추계
예 산 액	233,297	236,597	221,567	222,078	201,005	210,000
징 수 액	209,405	202,843	226,319	184,629	225,675	
결 산 율	89.8	85.7	101.9	83.2	112.3	

○ 지난년도수입은 해당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징수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세입과목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체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① '22년 체납액 768,199백만원	×	② 최근 3년 징수율 26.1%	×	③ 최근 5년 징수 증가율 4.6%	=	'22년 체납 징수예상액 210,000백만원
--------------------------	---	-------------------------	---	---------------------------	---	--------------------------------

○ 먼저, 재무국의 지난년도 시세 예산(이하 “징수목표”)액 대비 결산률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징수목표(2,216억원) 대비 101.9%(2263억원), 2020년도는 예산액(2,221억원) 대비 83.2%(1,846억원), 2021년도는 예산액(2,010억원) 대비 112.3%(2,257억원)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징수목표(예산액)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2천 1백억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4.5%(89억 9천 5백만원)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징수목표와 비교할 경우 90억원에서 266억원 낮은 수준이며,

- 금년 징수 전망액(2,257억원)과 비교해도 6.9%(157억원) 낮게 징수목표를 설정 하였는바, 이는 체납징수에 임하는 재무국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 2020년 체납 지방세 징수 결산 실적을 보면 서울시 체납 부과액 규모는 경기도에 이어 2위이나, 징수액은 경기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징수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 결손률은 1위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시도별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 〉

〈 2020년 〉

(단위: 억원, %)

시도	부과액(A)	징수액(B)	징수율(B/A)	순위	결손액(C)	결손율(C/A)	체납액(A-B-C)
전국	37,830	12,818	33.9	-	7,014	18.5	17,998
서울	8,781	2,006	22.8	17	2,483	28.3	4,292
부산	1,829	626	34.2	14	271	14.8	932
대구	877	489	55.8	1	181	20.6	207
인천	2,151	817	38.0	8	387	18.0	947

광주	675	313	46.4	4	148	21.9	214
대전	528	270	51.1	2	70	13.3	188
울산	787	276	35.1	12	166	21.1	345
세종	231	91	39.4	7	30	13.0	110
경기	11,432	4,014	35.1	12	1,960	17.1	5,458
강원	925	426	46.1	5	113	12.2	386
충북	942	354	37.6	9	154	16.3	434
충남	1,605	593	36.9	10	185	11.5	827
전북	1,002	408	40.7	6	124	12.4	470
전남	845	393	46.5	3	87	10.3	365
경북	2,034	716	35.2	11	269	13.2	1,049
경남	2,420	805	33.3	15	330	13.6	1,285
제주	766	221	28.9	16	56	7.3	489

※ 서울시는 자치구포함, 타 시도는 시군구 포함, 출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7쪽

○ 한편, 지난년도수입 총 체납액 규모 추이를 보면, 2017년 1조 3,282억원에서 2020년 최종 8,343억원까지 4,939억원 감소하였는바,

- 이는 매년 2천억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징수금액으로 볼 때, 신규 발생하는 체납액 규모에 비해 결손처분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 결손처분 규모: 2016년 234,810백만원 - 2017년 216,281백만원) - 2018년 367,345백만원) - 2019년 289,676백만원) - 2020년 224,809백만원(출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3~1264쪽)

〈지난년도 시세 연도별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목표액) (A)	징수결정액 (총체납액) (B)	수납액 (C)	예산진도율 (예산액 대비 목표달성률) (C/A)	징수율 (총체납액 대비) (C/B)
2017년	233,297	1,328,201	209,404	88.0	15.8
2018년	236,600	1,256,009	200,327	84.7	15.9
2019년	221,567	1,030,407	226,319	102.1	22.0
2020년	222,078	834,347	184,629	83.1	22.1
2021.8월 (진행중)	201,005	668,220	192,907	96.0	28.9

※ 출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쪽

- 결손처분 과정에 있어서 재산조회 등은 면밀하게 조사가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 추이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징수결정액(A)	1,328,201	1,256,009	1,030,407	834,347	660,427
예산(징수목표)액(B)	233,297	236,597	221,567	222,078	201,005
예산편성률(B/A)	17.6	18.8	21.5	26.6	30.0
결산(수납)액(C)	209,405	202,843	226,319	184,629	225,675
결산률(C/B)	89.8	85.7	101.9	83.1	112.3
징수율(C/A)	15.8	16.1	22.0	22.1	34.2
결손액(D)	257,982	383,784	314,213	245,339	45,872
결손률(D/A)	19.4	30.6	30.5	29.4	6.9

나. 세외수입

- 2022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 예산¹⁾은 전년 예산(2,539억 3천만원) 대비 5.9%(151억 1백만원) 감액된 2,388만 2천 8백만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23조 3,359억 4천 1백만원)의 1.0%(전년도 1.3%)를 차지하고 있음.

가) 정상적세외수입

1) 공유재산임대료

- 재무국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서울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대부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200			세외수입	
		210	정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1) 이하 2021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음(추가경정예산 등 미편성).

	212-02 하천사용료	2. 도로통행료수입 1. 하천점용료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2. 하천수사용료수입 1. 하수도점용료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수입 1. 상수도요금수입
	212-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212-06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212-09 기타사용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 최근 3년 평균 징수액(1,050백만원)에 2021년 자가 상승률(11.5%)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6%(44억 9천만원) 감액된 84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재무국 세외수입 예산액의 3.6%를 차지).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1,224,899	11,782,706	12,187,236	2,320,536	14,027,853	8,270,979	12,974,134	11,403,802	8,483,235
결산율: 105.0%		19.0%		59.0%		87.9%		△34.6%

○ 다만, 전년 대비 감편성 규모가 큰 이유는 본 세입과목 주요 세입원인 4곳의 면허시험장('21년 기준 67.3% 차지, SH에 위탁관리) 중 '강서면허시험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국가에 교환 처분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4개 면허시험장 연간 대부료 비교> (단위 : 천원)

면허시험장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전체 예산액	14,027,853	12,974,134	8,483,234	
	예산대비비율	76%	67.26%	79.23%	
	계	10,660,747	8,727,312	6,721,344	입찰제외
강서	토지	4,035,004	2,016,280	-	'21.6.30 사용종료
	건물	무상	무상	무상	

면허시험장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신체검사소	321,000	158,876	입찰	
도봉	토지	795,478	808,679	902,000	지가상승률 *1.1154%
	건물	무상	무상	무상	
	신체검사소	52,899	50,864	입찰	
서부	토지	4,912,360	5,217,271	5,819,344	
	건물	무상	무상	무상	
	신체검사소	299,539	241,000	입찰	
	경찰청(콜센터)	173,529	183,518	입찰	
강남	토지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과	특별회계/별도
	건물	무상	무상	무상	
	신체검사소	70,934	50,820	입찰	

- 다만, 재무국에서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일반재산을 SH공사에 위탁 관리 하고 있고, 금년에 통보된 감사원 감사 조치요구 사항(2021.4.20.)을 보면, 변상금 부과, 측량 의뢰, 매각·대부계약 체결, 행정재산 전환 등 조치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바, 일반재산의 위탁 징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일반 재산 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임대수익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50%, 시 5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0%~20%, 시 80%~90%

2) 기타사용료

- '기타사용료' 수입은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과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시유재산 사용료를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 예산편성 규모는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1,071백만원)에 2021년 지가상승률(11.5%)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0.7%(8백만원) 증액된 11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년도 상반기까지 송파구 풍납동 시유지 부지를 사용 허가받은 삼표산업에 대하여 향후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을 반영하여 '21년부터 변상금 부과

<연도별 기타사용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102,287	1,961,260	2,091,754	2,153,619	2,301,096	1,450,915	1,185,861	1,185,861	1,194,283
결산율: 177.9%		103.0%		63.1%		100.0%		0.7%

○ 다만, 재무국에서는 일부 ‘행정재산의 사용료(211-02)’를 본 ‘기타사용료’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임대료’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본 세입과목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212-05 공유수면사용료	2.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212-06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212-09 기타사용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3)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금고에 공공예금 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 전년 대비 287.8%(400억 7천 4백만원) 증액된 539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재무국 세외수입의 22.0%를 차지하는 규모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연도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39,266,904	55,561,525	39,200,441	49,135,587	35,404,000	20,428,525	13,923,152	43,084,000	53,996,606
결산율: 141.5%		125.3%		57.7%		309.4%		287.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추이를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출 등으로 인한 평잔 감소와, 정기예금 기준금리의 하락에 따라 정기예금 예치율(31.5%)이 전망수준(90%) 보다 현저히 낮아진 이유로 결산률이 57.7%(204/354억원)에 그친바 있고,
 - 2021년도는 과소 이월자금이 전년대비 1조 598억원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액 인상에 따른 지방세 초과세입 발생으로 평잔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309.4%의 높은 결산률을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무국은 2022년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액의 증가로 인한 평잔의 증가와 최근 5년간의 평잔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7.8%(400억 7천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공공예금 금리(1.52%)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기예금 예치 실적이 극히 저조한바, 기준금리가 공공예금 금리에 근접하고 있는 현 추세를 볼 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희자금 운영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 시금고 예·적금 약정 금리: 정기예금 COFIX금리(기준)+가산금리, **공공예금 1.52%(고정)**

※ 2022.11.16. 기준 정기예금 금리: 1개월 1.181%, 3개월 1.37%, **6개월 1.64%, 1년 1.84%**

< 시금고 금리 현황 >

금리적용일자	COFIX금리(신규취급액)	정기예금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21.08.18~ 21.09.15	0.95	0.84	1.03	1.30	1.50
21.09.16~ 21.10.15	1.02	0.91	1.10	1.37	1.57

금리적용일자	COFIX금리(신규취급액)	정기예금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21.10.16~ 21.11.15	1.16	1.05	1.24	1.51	1.71
21.11.16~ 21.12.15	1.29	1.18	1.37	1.64	1.8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의4(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나) 임시적세외수입

4) 공유재산매각수입금(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 재무국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 대비 50.7%(539억 9천 4백만원) 감액된 525억 1천 8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외수입의 22.0%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20~30%, 시 70~8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7~2.0%, 시 98~98.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514,960,932	109,977,946	472,985,620	29,974,839	57,956,955	30,109,970	106,511,747	76,217,958	52,518,245
결산율: 121.4%		6.3%		52.0%		71.6%		△50.7%

2022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2년 추계액 : 52,518,245천원
- 산출내역
 - 일반징수 : 37,515,350천원
 - ▶ 33,633,988천원('18년도~'20년도 징수평균액)×111.54%('21년 지가상승률)
 - 특별징수 : 15,002,895천원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등 : 35필지, 6,456㎡)

○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징수 현황을 보면, 2019년 6.3%, 2020년 52.0%, 2021년 71.6%(전망)로 나타나 매년 과다하게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위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시키고 있는 예산운용 행태로, 안정적인 서울시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세입과목이라고 하겠음.

5) 그 외수입

○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 항목으로, 전년 대비 0.4%(3억 8천 1백만원) 증액된 1,065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재무국 세외수입 중 비중이 큰 44.6%를 차지하는 세입임.

※ 그외수입 세입내역 : 시금고 출연금 및 법인카드 캐시백, 시유재산 위탁예금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이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 연도별 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33,820,969	39,888,116	106,674,580	107,917,955	106,034,875	107,661,937	106,149,979	116,686,814	106,530,784
결산율: 1117.9%		101.2%		101.5%		109.9%		0.4%

○ 주요 세입 내역은 시금고 출연금 및 법인카드 캐시백 등(1,036억 3백만원), 시유재산 위탁예금 이자수입(5천 9백만원),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17억 5천만원),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이자 등(11억 1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은 시유재산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발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아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 연도별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및 예산액 >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231,947	7,521,111	1,245,649	1,929,229	1,253,221	2,975,225	1,561,621	1,787,408	1,749,608
결산율: 610.5%		154.9%		237.4%		114.5%		12.0%

○ 예산 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8년 610.5%(62억 8천 9백원 초과), 2019년 154.9%(6억 8천 3백만원 초과), 2020년 237.4%(17억 2천 2백만원 초과), 2021년 114.5%(전망, 2억 2천 6백만원 초과)로 나타나 예산대비 과도하게 초과징수 되는 등 매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12.0%(2억 2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한편, 담당 공무원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 성격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세입 처리 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은 공무원의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태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 내역> (단위 : 원)

구분	연도	과세기간	가산세	납부사유	소관기관(부서)	납부 자원
본청	2021	가산세 납부내역 없음				
	2020	2020.2기예정	43,622	세금계산서 미발급	주차계획과	매입공제세액으로 납부
		2020.2기확정	6,590	"	도봉문화재단 (문화예술과)	수탁기관에서 납부
	2019	가산세 납부내역 없음				
사업소	2021	가산세 납부내역 없음				
	2020	2020.1기예정	601,65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서울식물원	매입공제세액으로 납부
		2020.2기예정	4,790	기한 후 신고	동부수도사업소	담당자 납부
	2019	2019.2기예정	168,969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서울시립대	매입공제세액으로 납부
		2019.2기확정	10,559	"	은평병원	매입공제세액으로 납부
			365,962	기한 후 신고	소방재난본부	담당자 납부

※ 출처: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3쪽

다. 종합의견

○ 종합적으로 2021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볼 때,

- 지방세 세입은 최근 5년간(2016~2020회계) 평균 예산액(16조 9103억원) 대비 15.1% 초과 징수(19조 4,682억원)되어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세입 호조로 전년 대비 19.2%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방세 세입추계의 과다한 오차 발생은,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재무국의 과학적인 세입 추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예산편성액(5조 5천 3백억원)은 금년 세입 전망액(6조 5천 5백억원) 보다 15.5%(1조 153억원) 적게 편성되었고,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보면 평균 1조 6,695억원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결산률이 142.9%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세율이 지속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면서 전환사업 보전 재원을 선공제(총 4.5조원)하고 그 나머지를 교부함으로써, 세율 인상 효과는 저조하게 나타나 허울뿐인 재정분권이 진행되고 있고, 더욱이 2022년

까지만 선공제하기로 한 계획을 2026년까지 4년을 추가 연장하였는바,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체납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징수 실적 또한 10.1%(548억원, 2020년 결산기준)에 그치고 있는바, 2015년부터 독립세화(2015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세목인바, 국세에 앞서는 조세채권 확보 등 체납 징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세목이라고 하겠음.
- 재산세는 2022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등 대선 공약이 발표(2021.11.15.)되는 등 재산세 세입 추계에 대한 변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긴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자동차세의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지방세법」에서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2000cc 기준)에 비해 25% 수준의 정액 세율로 운영되고 있는바,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전기차 등에 대하여 10만원의 정액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 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율은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그만큼 체납세액 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바,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세출예산 검토

○ 재무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조 9,219억 6천만원) 대비 9.6%(2,814억 7천만원) 증액된 3조 2,034만 3천만원 수준임.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3조 1,289억 1천 6백만원) 대비 2.4%(745억 1천 4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전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154억 3천만원, 순증)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29억 8천 5백만원, 147.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177억 4천 4백만원, 254.9%) 등 11개 사업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25억원, 전감),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25억원, 전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5억 4백만원, △1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225백만원, △67.1%),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3억 9천 1백만원, △96.3%)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재정보전금” 등 5개 사업임.

〈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비고
				증 감	비율	
1	재정보전금	1,675,686,000	1,866,943,000	191,257,000	11.4%	'22년 세입추계안에 따라 편성
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7,000,000	10,400,000	3,400,000	48.6%	舊북부지검/지법 매입 분납금 반영 (100억원)
3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	15,430,378	15,430,378	100%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21.4.5)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15,385백만원) 성동구에 매각 귀속금 반환(45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비고
				증 감	비율	
4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분담금	5,000,000	17,743,785	12,743,785	254.9%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22년 분담금 반영
5	시세 징수교부금	407,378,010	475,142,730	67,764,720	16.6%	'22년 세입추계안에 따라 편성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본 사업은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와 자재창고 운영 등을 통한 조직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8억 3천 1백만원) 대비 2.7%(2천 3백만원) 감액된 8억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7억 1천 7백만원) 대비 15.8%(1억 1천 3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000원 = 2,500천원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000원 = 33,000천원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000원 = 2,500천원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000원 = 33,000천원
공공운영비	○ 자재창고 공과금 140,000원*12월 = 1,680천원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400,000원*12월 = 4,800천원 ○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 자재창고 공과금 140,000원*12월 = 1,680천원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400,000원*12월 = 4,800천원 ○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000원 = 35,000천원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물품관리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18,000,000원 = 18,000천원	○ 물품관리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18,000,000원 = 18,000천원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17명*12월 = 70,200천원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17명*12월 = 70,2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442,325,000 = 442,325천원	416,559,000 = 416,559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50,000,000 = 50,000천원	50,000,000 = 50,000천원
○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123,205,000 = 123,205천원	151,249,000 = 151,249천원
	증감사유	
	노후 사무집기 교체 수요 증가 예측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상황이긴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 외교부는 지난 11월 1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당초 10월 13일까지 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까지 연장하였음. 이는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함. 또한, 외교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정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임.²⁾

-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행정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는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국외업무여비’는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2) 외교부 보도자료,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2021년 11월 13일자 참조.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재무국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50,000	42,844	7,156	14.3%
2020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 (20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0
2021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0

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 본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시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수령한 매매대금과 성동구와의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154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기타반환금등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15,385,126,297원 = 15,385,127천원
		○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45,250,827원 = 45,251천원
	증감사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귀속금 반환에 대하여 '22년도 신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 먼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153억 8천 5백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6가)의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위해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2016.12.) 후,

〈 시유재산 매각 계약 내역 〉

재산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매각금액 (백만원)	계약 체결일	매수자	비 고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예정부지	서초구 원지동 34-11 외 59필지	전,답 임야	60,002	73,291	'16.12.8	보건복지부	5회 분납('17~'21년) 납부 기일매년 12.1)

- 계약이 합의해제(2021.4.5.)됨에 따라 기 납부*(466억 2천 3백만원)받은 대금 중 용역비로 사용된 6억 7백만원을 제외한 466억 2천 3백만원을 3회에 나누어 2024년 12월 이전까지 분납**하기 위하여 첫회분을 편성한 것임.

〈 *매각대금 납부 현황 〉

연도별	'16.12월 (계약금)	2017년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부과유예)	2022년 (5차)
납부액	52억원	105억원	288억원	21억원 (분납이자)	144억원	144억원

※ 총 466억원(계약금 52억원, 중도금 393억원, 분납이자 21억원)

〈 **반환금 연차별(3회) 분할 지출 계획 〉 (단위 : 원)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12. 이전
분납 원금	15,338,606,000	15,338,606,000	15,338,606,590

□ 추진경위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14.12.04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 서울시-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신축·이전 추진
 - '19.09.08 : 국립중앙의료원'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언론발표

- '20.07.01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21.04.05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체결(보건의료정책과)

- 다만, 매매계약 해제 협의사항 중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본 계약 해제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결손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4천 5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동구에서 2017년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소송*(원고 성동구 일부승, 최종 2019.6.30. 확정) 과정에 추가 발생한 재개발구역 내 점유자 매각 수납 건('18.1.~'20.12.)에 대하여 관련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매각 귀속금 차액과 이자(판결과 동일하게 민법상 연 5% 적용)를 지급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성동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17957			
사건번호	2019다217957	사건명	[전자]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피고	서울특별시
재판부	민사1부(아) (전화:02-3480-1339)		
접수일	2019.02.28	종국결과	2019.06.13 심리불속행기각
원고소가	3,141,054,617	피고소가	455,649,369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일	2019.03.06		
인지액	24,211,200원		
판결도달일		확정일	2019.06.13

- 다만, 사실상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성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예산은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의 부재 또는 자의적 운영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바,

- 향후 자치구 위임 사무에 대한 면밀한 규정 마련을 통하여 자치구와 불미스러운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이하 생략)

다.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 본 사업은 서울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안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사업 근거: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12.10.13)

-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본 사업이 자치구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본 사업은 행정국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2013년부터 분리되어 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자치구의 시세입 평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당시 행정국 80억원(당초 100억원), 재무국 20억원)하면서, 2021년도 사업예산(50억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663(2013.1.8.))

※ ‘13년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12년 20억원)는 재무국 별도 편성

- 본 사업 예산이 모든 자치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어,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시 세입 증대를 유인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사유로,
- 의회의 2021년 예산안 심의 시 예산편성액(50억원 편성)의 50%(25억원)가 삭감된바 있고, 이후 재무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근무 확대 등 자치구의 인력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사업을 폐지*하고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25억원)까지 전액을 감액편성 한바 있음.

* 시 세입종합평가 사업폐지 계획” 방침(세무과-3002, 2021.2.10.)

< 최근3년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0년 (2019회계연도)	2019년 (2018회계연도)	2018년 (2017회계연도)
합 계	1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종 로	631,250	229,250	195,000	207,000
중 구	465,250	157,250	155,000	153,000
용 산	631,000	167,000	277,000	187,000
성 동	529,000	184,000	100,000	245,000
광 진	773,000	295,000	236,000	242,000
동대문	629,250	185,250	222,000	222,000
중 량	698,250	237,250	255,000	206,000
성 북	641,000	307,000	222,000	112,000
강 북	450,000	37,000	206,000	207,000

구 분	합계	2020년 (2019회계연도)	2019년 (2018회계연도)	2018년 (2017회계연도)
도 봉	617,000	120,000	275,000	222,000
노 원	335,000	160,000	0	175,000
은 평	546,250	209,250	210,000	127,000
서대문	656,000	213,000	225,000	218,000
마 포	750,000	307,000	221,000	222,000
양 천	390,000	137,000	206,000	47,000
강 서	678,250	187,250	222,000	269,000
구 로	367,000	220,000	100,000	47,000
금 천	390,000	137,000	35,000	218,000
영등포	627,250	129,250	252,000	246,000
동 작	930,000	307,000	322,000	301,000
관 악	795,000	242,000	272,000	281,000
서 초	481,000	190,000	122,000	169,000
강 남	559,000	163,000	142,000	254,000
송 파	710,250	222,250	287,000	201,000
강 동	720,000	257,000	241,000	222,000

○ 다만, 본 사업에 따른 ‘자치구재원조정비’(예산액 50억원)와 함께 자치구에 인센티브로 제공해 온 포상금(1억원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에 편성)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별 개정세법 교육책자 10,000원*700부*90% = 6,300천원 ○ 유공납세자 선정 및 운영 = 2,100천원 - 표창장 제작 5,500원*200명 = 1,100천원 - 현수막 제작 등 수여식 비용 1,000,000원 =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별 개정세법 교육책자 10,000원*700부*90% = 6,300천원 ○ 유공납세자 선정 및 운영 = 2,100천원 - 표창장 제작 5,500원*200명 = 1,100천원 - 현수막 제작 등 수여식 비용 1,000,000원 = 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입 확보 및 과징지도 활동비 13,500,000원 = 13,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입 확보 및 과징지도 활동비 13,500,000원 = 13,5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00원*59명*12월 = 70,800천원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00원*59명*12월 = 70,800천원
포상금	○ 시세입확보 유공기관 시상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시세입확보 유공기관 시상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21년도 재무국 소관 지구 공동협력사업 폐지(코로나19 장기화 등 직원피로도 감 안)에 따른 자치구 직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증액	

-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시세 징수 공무원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포상금을 100% 증액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은,
- 자치구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기존 예산 50억원)’를 삭감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포상금(2억원)’ 제공을 통하여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시 세입확충을 유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임.

※ 포상금 세부 운영계획 수립 예정

- 다만, 자치구 간 경쟁을 유발하는 본 인센티브의 폐지 취지로 볼 때,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본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서울특별시세의 자치구 위임 징수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교부금’(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105억원) ‘포상금’ 등으로 인하여 국세에 비해 3배 수준의 과다한 징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효율적인 시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세를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가칭 ‘시세징수사무소 등 설치’ 등) 마련 등 지방자치 시행 이전부터 30년

넘게 전례답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시세 징수 사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사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을 위한 것으로, 전년 예산(20억 2천만원) 대비 147.8%(29억 8천 5백만원) 증액된 50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출연금	○ '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재산세(도시지역분) '18~'19년)의 1만분의 1.5 16,128,993,106,000원*0.015%-3 99,134,000원 = 2,020,215천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미편성분 399,134,000 = 399,134천원
		○ 19년 결산 시세 보통세 미편성분 2,237,582,000 = 2,237,582천원
		○ 20년 결산 시세 보통세 편성분 2,368,712,000 = 2,368,712천원
	증감사유	
	재산세 도시지역분 미편성분 399,134천원 2019년 결산 시세 보통세 미편성분 2,237,582천원 반영	

- 본 예산은 출연동의안 심사가 보류(제296회 임시회, 2020.9.)되어 당시 편성하지 못한 2021년 귀속분(22억 3천 8백만원)과, 2022년 귀속분(23억 6천 9백만원, 제302회 임시회 심사보류(2021.9.)) 및 2019년 귀속분 출연시 제외한 재산세 도시지역분(3억 9천 9백만원, 2019, 2020년도 귀속분 중)을 합하여 2022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임.

- 다만, 2020년과 2022년도 귀속분 출연동의안이 심사 보류되어, 본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무국에서 편성한 본 사업 예산 전액의 삭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출연동의안 심사보류 주요 사유는, 시행령으로 보통세 세입의 일정률을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침해와,
 - 이에 따른 과도한 출연 규모로 인한 지방세연구원의 방만한 재정운영(청사 매입 등) 문제 등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의회에서 그 부당성 및
 - 재산세 세세목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는 사실상 목적세로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액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원 출연금 산정 세목에서의 제외 등, 연구원예의 출연금 산정에 대한 개선을 누차 주문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의결 지연 또는 심의보류를 통해 2017년 회계연도 출연금(1,965백만원)은 2018년도에 당해년도 출연금과 함께 출연하고, 2020회계연도 출연금(2,419백만원)은 금년에 출연(2,020백만원)*하였으며, 2021회계연도분(2,237백만원)은 현재까지 보류(2020.9.)되어 있는 실정으로,
 -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88,152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서울시	19,635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09	2,631	414	2,424
시본청	16,071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	2,020
자치구	3,564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5	384	414	404

※ '17회계연도분 출연금 미지급분(1,965백만원)은 2018년 예산과 합하여 지급

※ '20회계연도분 출연금(2,419백만원)은 '21년도에 출연(2,020백만원)

※ '21회계연도분 출연금(2,237백만원) 미출연 중

-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률이 하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과도한 출연 규모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의 요구 수준(0.01%)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연구원 설립(2011년) 이후 세입증가에 비례하여 산정해온 출연금 산출 방식은, 출연자의 사업계획 등 심사를 거쳐 출연규모를 결정하는 일반 출연기관(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현황 참조(첨부))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출연 형태라고 할 것이며,
- 경제성장률(2~3% 내외)과 비교하여 보통세 세입 증가율(10.5%)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 운영비로서의 출연금 규모까지 이에 비례하여 인상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하겠음.

<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2.9	3.2	2.9	2.2	-0.9

※ 출처 : 한국은행 「국민소득」

- 따라서 앞서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서울시 부담 총액 227억원 중 전년도 분담액 50억원을 제외한 175억 1천 1백만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비(2억 3천 2백만원, 서울시 ‘21~22년도분) 분담금 지급을 목적으로,
 - 전년 예산(50억원) 대비 254.9%(127억 4천 4백만원) 증액된 177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간 제3차 위·수탁 협약 체결(2021. 8.31.)에 따라 제2단계 사업 개시에 맞추어, 2021년도 예산에 2021 예산안에서 삭감된 50억원과 ‘22년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합하여 2022년도 예산액을 요구(177억원)하고 있음(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예정일 : 2023.1.25.)
 - ※ 본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목적으로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사업은 사업종료되어 예산 미편성.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위탁협약 체결 〉

추진배경

- 전국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별 운영 중: 서울 vs 표준(16개 시도)
 - 서울(세무종합시스템 '99~), 16개 시·도(행안부 개발 표준시스템, '06~)
- 시스템 노후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필요
 - 시스템 중복투자, 납세자 불편, 운영·관리 한계에 이른 시스템 등

추진경과

- 행안부 주관 전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9~)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및 16개 시·도 분담금으로 비용 총당
- 서울시에서도 전국 시스템 통합구축 참여하기로 정책결정('20.4월)
 - 서울시 2021년분 구축사업비 50억원 예산편성
- 1단계 완료('20.4.) 및 서울시 참여가 반영된 2단계 구축사업 진행 중

※ 구축사업비 : 총 2,193억 원 (SW 개발비, HW·상용SW 구입비, 감리비, 예비비)

(단위: 억 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서울시	계	'21	'22
합계	2,193	545	1,648		227	153	75
지방세	1,767	515	1,252*		178**	104	75
세외수입	426	30	396		49	49	-

※ 구축비 지방세(지방비) 1,252억원*에 ('21년, '22년)유지보수비 13억원(1,329,506천원)이 미포함 되었으며, 서울시 지방세 부담금 178억원**에는 유지보수비 232,424천원이 포함 되었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유지 보수비 분담금 0 = 0천원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유지 보수비 분담금 232,424,000원 = 232,424천원
	증감사유	
	'21년 납입 분담금 미납액 93,966천원 및 '22년 분담금 138,458천원 합산 금액임	
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금 5,000,000,000원 = 5,000,000천원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금 17,511,361,000원 = 17,511,361천원
	증감사유	
	'21년 시스템 납입 분담금 미납액 10,163,980천원 및 '22년 분담금 7,347,381천원 합산 금액임	

※ 재무국은 2019년 상반기까지 자체 '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세입시스템 통합 시도는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비용 발생, 과세자주권 훼손,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으로 편승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12.10.13))하면서 2021년 1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재무국 독자개발에서 행안부 시스템으로의 편입으로의 입장 급선회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의 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비 등의 규모와 분담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미비한 점 등 의회 심의권을 훼손한 점, 서울시의 추가 편입으로 인한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과 통합 구축비 등 분담금 인상 여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위하여 예산 요구액 100억원의 50%가 삭감되어 50억원으로 편성된 것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

-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BPR/ISP('17년)
-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18) 통과
 - ※ 예타결과: B/C(비용-편익분석, 1이상) 1.06, AHP(계층화 분석, 0.5이상) 0.63
- ◆ 지방세 1단계 사업 추진('19. 8. ~ '20. 4.): 146억, 삼성SDS
- ◆ 총사업비 기획재정부 조정
 - : ('19.) 3,144억 → ('20.6) 3,148억 → ('21.2)3,482억 → ('21.5)3,475억
 - ※ '20.6(이관비 등 증액 33억), '21.2(서울시 통합비용 등 증액 334억), 자율조정(36억)
- ◆ 2단계 사업 상용SW 분리발주 협의 및 구축 사업 발주('20.5 ~ '20.7)
 - 입찰공고 4회('20.9 ~ '21.1) ※ 무응찰 2회, 단독입찰 부적격 유찰 1회
- ◆ 2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착수('21.1.29.~)
 - ※ 장기계속계약(메타넷대우정보컨소시엄) 1차 '21.1 ~ '22.1 / 2차 '21. 12 ~ '23. 2
- ◆ 서울시 통합사업 추진('21.8 ~ '23.1, 17개월)
 - 사업예산 210억(지방세 153억, 세외수입 57억) 확정('21.7)
 - 세입행정, 대민, 인프라 통합 및 이관, 시험('21~'22)
- ◆ 구축완료 및 차세대 시스템 서비스 개통('23.1.25.)

※ 출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05쪽

○ 다만, 재무국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납세편의 시책의 도입 등에 따라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부해온 서울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 2008년까지 서울시가 자체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구)서울 특별시 재무회계시스템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흡수되어, 매년 분담금(연 4천만원 수준)을 부담해 오고 있는 상태로,
 -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22년까지 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분담금(395,945천원)을 부담하는 한편 향후 운영비 또한 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 또한 행정안전부 추진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은,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지도·감독권이나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권한도 없이 매년 과다한 출연금(‘20년도 24억원) 부담만 하고 있으며,
- 또한, 앞으로 시행될 ‘지방세 조합’ 근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처럼, 정부발의 했다가 삭제된 후 의원발의를 통해 2020년 12월 마련되는 등 행정안전부 주도로 설립·운영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률 등을 재원으로 운영을 계획하여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과다한 운영비 부담이 예견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제151조의2 신설).

-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정부의 자치단체 전환사업비를 선공제하고 지방소비세로 교부하는 등 국세 대비 지방세 7:3의 재정분권 계획도 사실상 무산되었는바,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경과된 지금, 일관되게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초헌법적 행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보다 자주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